

괴정2동산63-1번지다세대주택건립반대및동아파크뒷산책로확장반대청원의견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. 10. 17 - 고 광 응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1996. 10. 17

다. 상 정 일 자 : 제53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6차 도시산업위원회(96.10.26)상정채택

2. 제안설명의 요지(소개의원 : 고 광 응 의원)

- 94년1월 (주)광신건업이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하려다 주민 반발로 공사계획 포기
- 해발 130~200m의 산능선에 45%이상의 급경사와 녹지지역으로 주택건립은 자연훼손, 재난사고, 교통혼잡 등이 우려되어 주택건립 및 도시계획 시설 불가
- 동아파크 및 등산로 확장계획 철회
-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위하여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고시함이 타당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다세대주택 건립 예상지역은 상록침엽수(소나무외1종)가 2200본 가량(경급 10~20m) 활잡목(사방오리외 2종) 2640본 가량이 상층부에 형성되어 있으며, 하층부에는 활잡관목류가 밀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록침엽수의 임목도는 39.4%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.
- (주)광신건업의 다세대 주택 건립예정지에 임도의 설치에 있어서는 옥녀봉 임도사업으로 1995년도 예산 42,701,000원을 투자 B=4m, L=420m의 임도를 1996년도 예산 44,581,000원을 투자 B=4m, L=600m의 임도를 설치하는 등 2개년에 모두 1020m의 임도를 설치하였음

- 1994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1994-24호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학원 시설 고시에 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도시계획 변경통제 규정 제3조6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
- 다세대 주택 건립 예정지는 1985년 산사태가 발생하여 1,0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던 지역으로 이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건립할 경우 자연훼손으로 인한 생활 환경 파괴는 물론 해 지역은 지반이 경석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져 굴착기 발파로 인한 소음 등 주민 피해가 크게 따르는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
- 진입도로의 사정이 어려워 공사차량이 통행할 경우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염려가 크게 예상되는 지역임
- 건립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변 다수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렴이 이루어진 연후에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이 가하나 현 사업장 예상지역의 주변환경과 자연환경 훼손, 진입도로의 열악, 지반의 경사도 등을 고려하면 건립이 매우 곤란한 지역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(일문일답식으로 진행)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(찬성 : 최병선 의원)

-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불때 청원인들의 요구에 부합되고 있으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상정토록 하자는 찬성토론
- 자동차 운전학원 도시계획 시설 당시 의혹이 제기되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자는 토론이 있었음

6. 심사결과 :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서 채택

붙임 : 의견서 1부. 끝.

청 원 의 건 서

■ 건 명 : 괴정2동 산63-1번지 다세대 주택건립반대 및 동아파크뿔 산책로 확장 반대 청원의 건

■ 청 원 인 : 괴정2동 352-34번지 김·문·진 외 278명

■ 소개의원 및 소개년월일 : 고 광 웅 의원(1996. 10. 17)

■ 청원요지

- 해당지역은 구배 45%가 되는 산비탈의 급경사 지대로 임목이 울창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학원예정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었던 곳임.
- 그후 주민들의 그들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대책 강구등을 수립하지 못하여 자동차학원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
- 현재 이 부지에 소유자 (주)광신건설 대표 이영숙으로 부터 다세대 주택건립을 위해 사전결정 심의를 신청한 바 있으나, 96. 8. 26일 우리구 주택건설분과 위원회 사전 결정 심의에서 반려된 바 있음
- 그러나 현재 사업추체측에서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다세대 주택 건립을 재추진할 움직임이 있어 주민들의 반대 청원이 제출된 사항임.

■ 의견내용

- 괴정2동 산63-1번지 일원은 해발 130~200m의 45%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산림이 양호한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94년도에 일부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임
- 해지의 택지 개발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경관의 훼손과 진입도로 여건으로 인한 교통 흐름의 장애와 기존의 하수도 설치망으로 인한 배수시설 그리고 산사태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 등 주변의 입지여건과 그동안 본건과 관련한 주민정서와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때 다세대 주택 건립을 지양하고 임목이 양호한 현 녹지상태로 보존하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인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구 의회 의견서를 채택합니다.

1996. 10.

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의 회